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49

발의연월일: 2020. 10. 8.

발 의 자 : 윤준병 · 안호영 · 윤미향

노웅래 · 최종윤 · 장경태

어기구 • 이용빈 • 송옥주

이해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체불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替當金)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당금(替當金)"이라는 용어의 경우 일상 언어와는 다른 어려운 법령용어로써 용어 자체가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바, 국민이 쉽게 읽고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해당 용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소액 체불 임금등의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액체당금 신청 부터 지급까지 약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체불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어렵게 하는바, 소액 체불 임금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 부장관의 체불사실 확인으로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법상 내용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하고, 소액 체불 임금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 인되면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려운 법 령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동법상 내용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함.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체불 임금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5조 신설).

법률 제 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 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체당금(替當金)"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체당금"을 각각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중 "체당금"을 각각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3조제1항 중 "체당금" 을 각각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체당금"을 각각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9조제1호, 제20조제2항 후단, 제22조 제2호 중 "체당금"을 각각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체당금"을 각각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중 "체당금"을 각각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한다.

법률 제633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제목 및 같은 항 중 "체당금"을 각각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한다.

법률 제7466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한다.

법률 제1252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한다.

법률 제13047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체당금" 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혂 행 개 아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신 설>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 게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 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 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 -----체불 임금등 대지 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u>체불</u> 임금등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 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대지급금-----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 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u>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u>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u>체당금을</u>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u>체당</u>금을 지급한다.
- ④ <u>체당금</u>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u>체</u> 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 동부렁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 로부터 <u>체당금</u> 청구서 작성, 사 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⑥ (생략)
- ① 그 밖에 <u>체당금</u>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1.•2. (현행과 같음)
③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u>체불 임금등</u>
대지급금
④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5
•
(5)
⑤
(5)
⑤ <u>체불 임금</u> 등 대지급금
⑤
⑤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⑤ <u>체불 임금</u> 등 대지급금
⑤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⑤ <u>체불 임금</u> 등 대지급금

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u>체당금</u> 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 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 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 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생략)

- 제11조(수급권의 보호) ① <u>체당금</u>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② <u>체당금</u>의 수령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u>체당금</u>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u>체불 임금등</u> 대지급금
<u>п н н н</u>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급권의 보호) ① <u>체불</u>
<u>임금등 대지급금</u>
 ② <u>체불 임금등 대지급금</u>
③
<u>체불 임금등 대지급</u> <u>금</u>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u>체불 임금등 대지급금</u> -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고용 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u>체당금</u>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u>체당금</u>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u>체당금</u>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u>체당금</u>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체당금</u>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u>체당금</u>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세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u>체불 임금등 대</u>
지급금
<u>체불 임금등 대지</u>
급급
②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1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2 <u>체불 임금</u>
<u>등 대지급금</u>

- ③ 제2항에 따라 <u>체당금</u>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u>체당금</u>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 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u>체</u> 당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 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 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 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u>체당금</u>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 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15조(포상금의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체당</u>
 글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
 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
 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부담 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u>체당금</u>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

③체불 임금등 대지급
<u> </u>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④ <u>체불 임금</u>
<u>등 대지급금</u>
체불 임금등 대지
급금
제15조(포상금의 지급)
체불 임
<u>금등 대지급금</u>
제16조(준용)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 지, 제19조의2 및 제20조, 제22 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 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 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 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 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 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 으로, "개산보험료(概算保險 料)"는 "개산부담금"으로, "보 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 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 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 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심의위원회"는 "위원회" 로 본다.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7조에 따른 <u>체당금</u>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u>체당금</u>의 지급과 잘못 납부 한 금액 등의 반환
- 2. ~ 8. (생략)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 략)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체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제22조(보고 등) 고용노동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17조(기금의 설치) 체불 임금등 대지
<u> </u>
제19조(기금의 용도)
1. <u>체불 임금등 대지급금</u>
2. ~ 8. (현행과 같음)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u>체불 임금등 대지급금</u>
 제22조(보고 등)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 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 1. (생략)
- 2. 체당금의 지급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 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 금등의 사업주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 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 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 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 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7의2. (생 략)

,
1. (현행과 같음)
2.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
조요청) ①
1. ~ 7의2. (현행과 같음)
1. 1月4. (包含年 年日)

-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
 자에게 <u>체당금</u> 청구 근로자
 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가입
 기간, 적립금액 또는 부담금
 액, 지급금액 등 퇴직연금에
 관한 정보 자료(<u>체당금</u> 지급
 대상 기간에 한정한다)
-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게 체당금 청구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 및 납입자료(체당금 지급대상기간의 정보에 한정한다)

10. • 11.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 야 한다.
- 1. 체불사업주, <u>체당금</u> 청구 근 로자, 부당이득자(연대책임자 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 2. · 3. (생략)

③ (생 략)

제26조(소멸시효) ① 부담금이나 제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

8.					
 	<u>체 불</u> 	- 임금	등	 대지급 	 <u>구급</u>
					 내지급
٠,	<u>체</u>				급금-
_·	<u>체불</u> 	- 임금			<u> </u>
10. ·	· 11. (현행괴 		_ ,	
			-		
1	<u>></u> 	체물 역 			
3 (3. (현 (현행고 소(소멸	가 같음	-)		

을 징수하거나 <u>체당금</u> · 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 ③ (생 략)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기 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u>체당금</u>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받게 한 자
- 3.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부당하게 제7조에 따른 <u>체당</u>
 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
 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1. <u>체불 임</u> 금등 대지급금
2 <u>체불 임금등 대지</u> 급금
 3. (현행과 같음) ②
 1 <u>체불 임금등</u> <u>대지급금</u>

- 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에 따른 <u>체당금</u>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법률 제633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②(체당금 지급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u>체당금</u>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7466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②(추가징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 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u>체당금을</u> 지급받 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252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u>체</u>

2
<u>체</u>
불 임금등 대지급금
법률 제633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②(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범
위에 관한 적용례)
체불 임금등 대
지급금
법률 제7466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②(추가징수금에 관한 적용례)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법률 제1252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7 3 47
체불 임금등

당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3047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된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대지급금	
법률 제13047호 임금채권보	L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